

# 전자어음의 배서

양 석 완\*

## 目 次

- I. 머리에
- II. 전자어음의 배서방법
- III. 전자어음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IV. 자격수여적 효력과 전자어음법 제14조와의 관계
- V. 맺으며

## 국문초록

전자어음법의 제정은 유가증권법의 시각에서 증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어음은 유체물(有體物)이어야 한다는 수백 년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고정관념이 일시에 깨어진 것이다. 어음의 발행에서부터 유통, 권리행사에 관한 법리가 구성되고 성문화되었던 것인데, 어음의 소재가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됨으로써 비공간적인 정보가 어음의 효력을 가지고 지급수단으로 등장함으로 인해 기존의 어음법리에 일대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수년 전 한국은행이 거액의 신용창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서 '전자의상매출채권'을 개발한 바 있지만, 이는 지명채권에 불과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승낙에 의해 양도할 수밖에 없어 이용이 불편하고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 유통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어음의 배서와 관련된 논의를 새로 제정된 전자어음법과 기존의 어음법을 중심으로 규정상 상충될 여지가 있는 쟁점에 대하여 해석론적 체계를 가다듬고자 하였다.

요컨대, 전자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소재가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된다는 특성에서 비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뜻되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실제적인 법리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전자어음상의 어음행위의 방식 및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상의 행위는 전자어음법에 의해 규율되나, 어음행위의 효력 및 어음당사자의 권리관계는 기존 어음법이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된다.

주제어 : 전자어음, 배서, 원본, 선의취득, 자격수여적 효력

## 1. 머리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결제방법의 등장과 유가증권의 전자화라는 논의와 함께 IMF구제금융 후 약속어음제도의 남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배경에서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7호; 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함)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어음 시스템이 2005년 9월 27일 개통된 이래 참가은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국내 15개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어음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전자어음 발행인으로 등록된 기업이 147개, 수취인으로 등록된 기업이 4,690개로 2005년 12월말에 비해 발행인 등록기업은 162.5%(91개), 수취인 등록기업은 510.7%(3,922)의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어음의 발행도 7,742건(일평균 31.2건) 5,079억원(일평균 20.5억원)으로 2005년 12월말 250건 85억 1,000만원에 비해 일평균 건수로는 12배, 일평균 금액으로는 23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sup>1)</sup>

어음이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경제적 순기능은 있으나,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차차 어음결제 비율을 줄여 나가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하자는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생활에 전자기술이 널리 이용되면서 민간부문에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적 지급수단의 필요성은 지급거래가 일상적인 사무로 이루어지는 기업에서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까지는 주로 소규모의 상품·용역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이 개발되었을 뿐이고, 기업 간의

1) 한국은행, 2006년 중 전자어음이용 및 등록 현황 보도자료, 2007. 2. 12.

([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data.hwp](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data.hwp))

지급거래에 적합한 대규모의 전자적 지급거래수단의 개발은 활발하지 못했다. 전자자금결제 같은 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어음처럼 신용창조의 기능은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년 전 거액의 신용창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서 한국은행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개발한 바 있지만,<sup>2)</sup> 이는 지명채권에 불과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승낙에 의해 양도할 수 밖에 없어 이용이 불편하고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 유통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민간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신용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매우 활발히 이용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전자약속어음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지급결제업무가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배서에 의한 어음법적 양도방법은 지명채권양도방법과 달리, 선의취득과 항변절단이 인정되는 점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어음의 배서와 관련된 논의를 새로 제정된 전자어음법과 기존의 어음법을 중심으로 규정상 상충될 여지가 있는 쟁점에 대하여 해석론적 체계를 가다듬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전자어음의 배서방법

### 1. 배서전자문서의 첨부

어음은 배서에 의해 양도한다(어음법 제11조). 배서란 어음에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다(어음법 제13조 제1항).

한편, 전자어음에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1항). 실제로는 전자어음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거래은행에 배서요청을 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배서내역을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피배서인의 거래은행에 배서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인 배서는 어음의 뒷면이나 보전(補箋)에 하게 되는데(어음법 제13조 제1항),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어음에 있어서는 서면 등의 실체가 없으므로 배서의 구현방법 및 효력이 문제가 된다. 특히

2)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과제(1)」, 한국법제연구원, 2002, 39면

배서의 효력 중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된 배서의 연속성 구현방법이 문제가 되는 바, 전자어음법에서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음법 제13조 제1항이 어음 또는 보전지(補箋紙)에 배서하게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배서와 어음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되므로 전자어음에 배서하는 자는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sup>3)</sup> 즉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배서 전자문서는 전자어음과 별개의 전자문서이며, 이것은 종이어음의 배서가 어음의 뒷면이나 어음과 연결된 보전에 하는 것과 다르다.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피배서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종이어음에 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이를 피배서인에게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법에서는 현실적인 교부가 없으므로 피배서인이 수신한 때에 배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3항).

나아가 배서인이 피배서인 또는 그 대리인이 동 어음을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송신하고, 피배서인이 동 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피배서인이 동 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배서인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전자어음을 배서 교부한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3항,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제2항)는 규정 취지에 따르면, 이는 어음이론 중 교부계약설과 가장 근접하다고 본다.

특히, 그 어음을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검색<sup>4)</sup>)'한 때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피배서인에게 입력(수신)된 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수신(受信)은 수신자의 수령 의사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부계약설 쪽이 설명하기가 적합하다. 왜냐 하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 즉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발행인 등록 또는 수취인 등록을 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일상법전은 어음의 교부에 관하여 '임의의 점유의 이전(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이라고 규정하고있다.<sup>5)</sup> 이 경우 어음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발행인의 의사에 따른 교부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고, 다만 이는 인적 항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6)</sup> 권리의관설의 입장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3) 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2004. 7. 7면

4) 전자거래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15조

5) U.C.C. § 1-201(14)

6) U.C.C. § 3-105(b)

## 2. 백지식 배서의 허용 여부

전자어음법에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식 배서(어음법 제13조 제2항)가 가능한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자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어음법에 의하므로(전자어음법 제4조) 어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백지식배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에 관하여는 허용 긍정설과 부정설로 갈린다.

먼저 백지식 배서 긍정설은 전자어음법이 백지식 배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전자어음법 제4조에 따라 어음법상 허용되고 있는 백지식 배서가 전자어음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어음법 제12조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지인출급식 배서 역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어음을 백지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게 한 취지(전자어음법 제6조 제6항)에서 볼 때 백지보충권의 행사만 문제되지, 백지식 배서행위 자체가 전자어음에서 문제되지 않으므로 전자어음에 대한 백지식 배서 자체를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한다.<sup>8)</sup>

이에 대해 백지식 배서 부정설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백지식 배서를 허용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백지식 배서를 부정하는 결과와 같다는 취지이다. 즉 백지식 배서를 하는 실익은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피배서인란을 타인의 이름으로 보충하고 교부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교부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구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데에 있다(어음법 제14조 제1호, 제3호). 그런데 전자어음에 관해서는 단순한 교부가 있을 수 없고 또 전자어음법에서도 단순한 교부에 해당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교부에 의해 전자어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백지식 배서를 하더라도 그 피배서인은 자기의 이름을 보충하고 배서하거나 다시 백지로 배서할 수 밖에 없어 결국 백지식 배서를 허용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sup>9)</sup>

생각건대, 전자어음의 교부에 의한 양도방법에 따라 전자어음의 송신과 수신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배서와 동일하게 다시 공인전자서명이 요구된다. 즉 배서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때에는 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6항). 결국 백지식 배서된 어음을 단순한 교부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 내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백지식 배서된 어음의 피배서인란에 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을 보충하는 방법

7) 정찬형, 「영미 어음·수표법」, 고려대 출판부, 2001, 48면

8) 정경영,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2004. 7. 72-73면

9) 이철송, 「어음·수표법」(제8판), 박영사, 2006, 497면

(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한 문제된다. 배서인이 공인전자서명한 배서전자문서에 피배서인이 보충을 하게 되면, 이는 문서의 변경이 되며 변경을 하게 되면 공인전자서명이 보장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돼 버린다.<sup>10)</sup> 따라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을 보충 등 배서전자문서의 보충을 통한 권리이전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sup>11)</sup>

요컨대, 백지식 배서된 어음의 양도인은 어음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 길을 찾을 수는 없다.

### 3. 분할배서

#### (1) 분할양도 허용의 필요성

종이로 된 어음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여(어음법 제12조 제2항) 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어음의 액면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일부정산을 위해 별도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은 물리적 장애가 없이 분할이 가능하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어음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원활한 자금공급 등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sup>12)</sup> 특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가 마련될 경우 주로 활용되는 대상은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으로서 그 할인의 경우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의 구조는 주로 하청업체 C1, C2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B가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가공, 생산한 후 구매업체(대기업) A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경우 보통 B가 그 대금조로 A로부터 만기가 수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B가 C1, C2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분할하여야 하나 종이어음은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B는 C1, C2 등에게 물품대금

10)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하여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전자서명에는 그 서명자의 진정성과 서명된 전자문서의 무결성(無缺性)을 추정하고 있다.

11) 同旨 : 정경영, 앞의 논문, 73면

1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254): 주요골자 바. 참조  
동(同)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자어음의 발행금액은 평균 6,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2006년 중 전자어음이용 및 등록 현황 보도자료, 2007. 2. 12.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액의 어음 전부를 비싼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일괄하여 할인을 받아야 하는 비경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어음분할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필요한 어음할인을 막을 수 있어 자금결제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 제도가 존속하는 한 전자어음의 분할제도 도입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sup>13)</sup>

그러나, 전자어음법의 제정 당시에도 법안에 분할배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전자어음법안 제8조)<sup>14)</sup>, 심의과정에서 어음의 분할배서가 통화의 창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동 조항이 삭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sup>15)</sup>

또한, 어음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의 추세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고려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지난 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협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sup>16)</sup>

## (2) 분할배서 시 고려사항

### 1) 배서횟수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

경제계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일부배서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고, 나아가 일부배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어음할인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이 기업인들에게 어음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장점과 기업의 자금이동이 투명하게 되어 세원(稅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어음분할제도를 허용하면 어음의 유통성이 기존의 어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되고, 따라서 발행인이 부도되는 경우의 연쇄부도·연쇄파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발행인, 배서인이 상대하여야 하는 피배서인, 소지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피배서인이 증가하면 피배서인 사이에서의 인적항변 등과 관련하여 풀기 어려운 분쟁의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안과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sup>17)</sup> 사실, 이러한 피해의 우려 때문에 전에 전자어음법안

13)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1호(통권 20호), 2003. 3. 571-572면

14) 전자어음법(안) 제8조(어음의 분할배서) ① 어음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은 어음금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해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어음에 관해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의 보증도 또한 같다.

15) 분할배서를 허용할 경우 어음의 유통성을 기존 어음보다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다수자가 관련된 연쇄 부도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서, 2003. 5. 23. 8면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의견, 2003. 5. 23. 8면

16)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 『인권과 정의』 2006년 12월호, 202면

에 들어있던 어음분할규정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어음의 유통성 강화로 인한 연쇄부도의 우려와 피해자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총 배서의 횡수와 일부배서의 횡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2) 거래의 안전과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전자어음의 분할배서가 허용되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배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경우 발행인이 이증지급의 청구를 당할 위험이 많으므로 분할배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본 전자어음에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이해관계인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3) 별도로 분할배서 전 이해관계인의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분할배서 전 어음행위자가 분할 후 어음행위자로부터 소구받아 지급을 한 경우 이를 중앙관리기구에 등록하고 관계기관(은행,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정보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할배서 시 중앙관리기구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기록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전자어음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발행인, 배서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전자어음에 관한 기록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이증지급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있다.

분할배서가 허용될 경우 발행인이나 분할 전 전자어음에 대한 배서인은 분할 전 전자어음이나 분할 후 전자어음 모두에 의하여 이증으로 지급을 청구당할 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것이고, 수회에 걸쳐 지급제시를 받을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분할배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① 분할 전 전자어음에도 분할배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발행인이나 분할 전 전자어음에 대한 배서인이 이증지급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있고, ② 분할배서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은 분할배서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sup>17)</sup>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

17) 이철송, 「전자어음의 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1. 7. 31. 64면; 권종호, 앞의 논문, 572면

18)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글, 202-203면



태이고, 전자어음의 분할양도 허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위 의견 가운데 분할배서의 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납발과 다단계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배서의 총 회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시 분할배서의 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sup>19)</sup> 이에 위반한 전자어음의 효력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해결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분쟁과 분쟁발생시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III. 전자어음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 1. 자격수여적 효력의 전제

종이어음의 배서에는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권리이전적 효력(어음법 제14조), 어음상의 채무가 이행될 것을 담보하는 담보적 효력(어음법 제15조),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어음소지인의 권리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자격수여적 효력(어음법 제16조)이 부여된다. 전자어음법에서는 이러한 효력에 관해 동법에 규정이 없는 한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자어음법 제4조)고 규정하여 전자어음에서의 배서의 효력도 어음법에서와 동일하다고 본다. 특수배서의 종류와 그 효력도 종이어음의 경우와 같다.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전자어음의 최후의 소지인(전자어음상의 권리의 최후의 피배서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전자어음의 배서의 연속은 실물인 종이어음과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수취인의 배서로부터 현재의 전자어음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는 배서에 첨부되는 전자배서 문서에 의해 용이하게, 그리고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sup>20)</sup> 배서의 연속여부는 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을 가진 공인전자서명을 할 때에 받은 공인인증서의 날짜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그런데 문제는 전자어음법에서도 이러한 전자어음의 배서의 연속 및 이에 의한 선의 취득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해 현행 전자어음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22)</sup> 전자어음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

19) 정찬형, 「전자어음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2004. 7. 26-28면

20) 정경영, 앞의 논문, 71면

21) 정동윤, 「어음·수표법」(제5판), 법문사, 2004, 479면

22) 정경영, 앞의 논문, 71-72면

가 유일한 원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확인해 주는 전자등록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잔류성(殘留性)으로 인해 종이어음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이중양도, 삼중양도 혹은 극단적인 다중양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유통방식에 권리의 적법성 추정이라든가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어음의 유통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자어음의 배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자어음의 이전에 종이어음에서처럼 유일한 어음 그 자체에 대한 점유가 이전(교부)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원본인지 확인될 수 없는, 동일어음이 다수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전자어음법에는 어음의 원본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어음 자체의 송·수신에 의해 어음이 발행되고 양도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은 어음의 원본여부가 파악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기술적 방법은 법에서 명문으로 정하는 바 없더라도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어음의 발행·배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되도록 하거나 원본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sup>23)</sup> 더욱이 법원에 증거제출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의한 전자어음의 전송이 있는 경우에 전송된 전자어음은 원본(原本)이 아니라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전자어음의 증거력을 판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sup>24)</sup> 따라서 전자어음의 원본성 파악은 가능한 것을 전제로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을 논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종이어음처럼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선의취득요건도 전통적인 유가증권 선의취득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어음의 특성에 맞게 변용할 필요성이 있다.

## 2. 자격수여적 효력의 요건과 범위

### (1) 전자어음법에 의한 유효한 전자어음일 것

전자어음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따른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법에 의해 전자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

23) 이철송, 앞의 책, 498면; 이철송, 앞의 논문, 12면; 이에 대한 구체화는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참조

24)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8조는 이와 같은 취지로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어음이 언제 발행된 것으로 보는가에 관하여는 앞에 논한 바와 같이 견해가 갈라진다.

요컨대, 어음이론 중 교부계약설 또는 발행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한 발행인의 의사에 의한 전자어음의 점유이전, 즉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수신한 때 이후라야 선의취득이 성립될 수 있다. 발행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증권작성 후 어음행위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전자어음 수신의 상대방에게 어음을 송·수신함으로써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純正발행설)이고,<sup>25)</sup> 다른 하나는 전자어음 수신의 상대방인가 아닌가는 묻지 않고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든 유통의 가능성을 예견하여 어음의 점유가 이전되면, 즉 송·수신되면 어음채무가 성립한다는 견해(修正발행설)이다.<sup>26)</sup> 앞의 견해는 교부계약설과 유사하지만, 점유이전행위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수령능력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교부계약설과 구별된다.

이처럼 발행설은 결과에 있어서 교부계약설과 창조설의 중간적 견해이나, 어음행위는 증권작성 후 전자서명을 한 자의 의사에 기하여 어음의 점유이전을 하는 행위, 즉 발행에 의하여 성립하는 일방적 행위, 단독행위라고 보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창조설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견해는 어음채무자와 어음취득자 쌍방의 이해를 조화하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서, 이들 중 상당수는 발행설을 취하면서 권리의관설에 의한 보안을 인정한다.<sup>27)</sup>

## (2) 양수인은 전자어음의 고유한 양도방법으로 양수할 것

일반적인 어음의 양도방법은 '발행 또는 배서·교부'나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자어음에 있어서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행위자는 이를 어음행위의 상대방인 수취인 혹은 피배서인에게 송·수신하는 양도방법만이 유일하다. 전자어음에 관해서는 단순한 교부가 있을 수 없고, 전자어음법에서도 단순한 교부에 해당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sup>28)</sup> 따라서 양수인은 단순한 교부에 의한 양도방법이나 상속, 회사의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 및 전부명령,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등 특정승계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자어음의 고유한 양도방법으로 양수받아야만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시금지 전자어음이나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어음법 제11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5) 石井照久, 「手形法·小切手法」, 弘文堂, 1970, 30面

26) 田中誠二, 「新版 手形·小切手法(三全訂版)」, 千倉書房, 1980, 72面

27) 서돈각·정완용, 「제4전경 상법강의(하)」, 법문사, 1996, 178면 ; 손주찬, 「제11정증보판 상법(하)」, 박영사, 2005, 67면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6, 115면

28) 이철송, 앞의 책, 497면

### (3) 양수인이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어음의 선의취득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이고 전자어음에도 어음법 제16조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양수인의 형식적 자격, 즉 배서의 연속이 요구된다. 배서의 연속있는 어음양수인만이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어음의 배서의 연속은 종이어음과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수취인의 배서로부터 현재의 어음 소지인에게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는 배서에 첨부되는 전자배서문서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배서의 연속 여부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만 판단한다.<sup>29)</sup>

다만 배서의 연속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증명하면 배서의 연속이 가교(架橋)되어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sup>30)</sup> 생각건대, 상속 또는 지명채권양도방법 등과 같은 어음법 외적인 권리승계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상속인이 상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가지고 있거나, 채권양도증서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확실하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단절된 배서는 가교되어 배서의 연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믿고 어음의 점유자로부터 전자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선의자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sup>31)</sup>

### (4)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을 것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선의취득제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무권리자한정설이다. 선의취득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종래의 통설이 취하는 입장이며, 독일의 소수설이다.<sup>32)</sup> 선의취득에 의한 보호범위가 가장 협소한 견해이다. 예컨대 甲

2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 다 33156 판결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 다 902 판결 :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 다 455 판결 등

30) 궁정설 : 정동윤, 앞의 책, 156면 :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191면 : 최기원, 「어음·수표법」(제4증보판), 박영사, 2001, 413면 : 채이식, 「개정판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166면. 부정설 : 정찬형, 앞의 책, 472-473면 서돈자·정경영, 앞의 책, 505면 : 鈴木竹雄·大隅健一郎(編), 「手形法·小切手法講座(4)」, 有斐閣, 1965, 131면

31) 권리이전적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이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적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5. 9.29. 선고 94다58377 판결이 인정하고 있다.

32) 서돈자·정완용, 앞의 책, 104면 : 손주찬, 앞의 책, 117면 : 이철송, 앞의 책, 333면 : 채이식, 앞의 책, 158면 : 田中誠二, 前掲書, 116-119면 : 大隅健一郎, 「改訂 手形法小切手法講義」, 有斐閣, 1980, 51면 :

→A→B→C의 순으로 배서양도된 어음에서 A에서 B로 이전된 경위가 배서의 위조에 의한 경우에는 물론 배서가 있었으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B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이며 중과실 없는 C만이 오직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sup>33)</sup>

이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에서 진정한 권리자(구 소지인)가 어음의 점유를 잃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의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가 양도인의 무권리만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어음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가 점유를 잃은 때에는 그 소유권까지 잃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은 동 어음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sup>34)</sup> 따라서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소유권자의 외관을 스스로 갖고 있는 무권리자로부터 또는 어음을 양도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어음상의 무권리자로부터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때'란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외에 양도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자(양도인의 무권리를 전제로 하여)임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sup>35)</sup>

둘째는 무제한확장설이다.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양도인의 무능력, 무처분권, 무권대리, 의사표시의 하자과 양도인의 인적 동일성의 흠결 등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널리 이를 인정하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소수설이었으나, 독일의 통설·판례의 입장이다.<sup>36)</sup>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에는 양도인이 스스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배서를 하여 점유를 잃은 경우를 포함하므로, 그 결과 현소지인에 대한 '점유를 잃은 자'는 양도인 자신의 경우도 해당한다.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때'라고 하는 것도 현소지인이 연속하는 배서의 '최종의 피배서인'이면 족한 것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인에 형식적 자격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sup>37)</sup>

Jacobi. Ernst. Wechsel-und Scheckrecht. Walter De Gruyter & Co.. 1956. S. 58-63

33) 이철송, 앞의 책, 330면

34) 田中誠二, 前掲書, 116面은 '점유를 잃은 자'를 양도인 이외의 자로 풀이한다.

35) 정찬형, 앞의 책, 517면

36) 이기수, 「어음법·수표법학」(제4판), 박영사, 1998, 256면 : 정찬형, 앞의 책, 518면 : 최기원, 앞의 책, 461면 : 鈴木竹雄, 「手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76, 252面 : Stranz, J./Martin Stranz, Wechselgesetz, 14. Aufl., 1952, S. 109-110 : Hueck, Alfred/Canaris, Claus-Wilhelm, Recht der Wertpapiere, Verlag Franz Vahlen, 12. Aufl., 1986, S. 90 : Zöllner, Wolfgang, Wertpapierrecht, Verlag C.H.Beck, 14. Aufl., 1987, : BGH 1951, 2, 7(L.M Scheck G. Art. 21 Nr. 1).

37) 정찬형, 앞의 책, 518면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처럼, 甲→A→B→C의 순으로 배서양도된 어음에서 B가 어음을 점유함에 있어 절취·습득 등 A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가 A로부터 일단 어음을 양도받은 한, A→B간의 배서가 무능력, 무권대리, 의사표시의 하자 등으로 무효·취소되었다 하더라도 B는 선의취득한다. 즉 무권리자한정설이 인정하는 선의취득자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위 예시의 B)도 선의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설이다.

셋째는 제한확장설이다. 대체로 무제한확장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나, 양도인이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sup>38)</sup> 양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sup>39)</sup>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A→B간의 배서가 학자에 따라서 범위를 좁혀 무능력 이외의 사유, 또는 무능력 및 의사표시의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B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생각건대, 거래의 안전 또는 유통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양도인의 무능력을 제외한 제한확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무권리만 치유된다고 보게 되면 무권대리인을 통해 전자어음을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 가. 전자어음의 도난, 분실 등으로 무권리자가 배서한 경우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종이어음과 달리 현실적인 교부가 없이, 어음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어음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제3자가 어음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나. 전자어음이 착오에 의하여 양도되고 양수인이 이를 기화로 배서한 경우

##### ① 착오로 전자어음을 양수받은 무권리자가 다시 배서한 경우

전자어음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착오로 발행 혹은 배서하는 수가 있을 수 있고, 아울러 전자어음관리기관이나 거래은행의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전송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전자어음이 어음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로 발행 혹은 배서되고, 이를 수신 받은 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으로서 다

38) 정희철, 앞의 책, 213-214면

39) 정동윤, 앞의 책, 158-159면

시 배서한 경우에 제3자인 피배서인은 배서가 연속된 상태에서 선의로 전자어음을 취득하였다면 전자어음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와 전자어음의 반환

전자어음법에는 전자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아울러 이러한 통지가 있으면 전자어음은 발행 또는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착오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어음행위에도 역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무권리자로부터 다시 배서받은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전자어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선의취득자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반환하게 하려는 취지라면 “선의취득자는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더 나아가 어음행위가 취소되면 발행, 배서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전자어음행위에 대한 기록도 말소되는데, 이 경우 후행하는 어음행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가 하는 점이 또한 문제된다. 이른바 어음행위 독립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sup>40)</sup> 전자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어음법 제7조의 어음채무의 독립성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은 전자어음법 제4조에 의하더라도 자명하다. 따라서 발행, 배서 등의 어음행위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전자어음행위에 대한 기록이 말소되기까지의, 후행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2)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가. 대리권 또는 처분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대리인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되는 한, 예컨대 그가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의 소지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 또는 처분권이 없는 경우에 처분권자가 처분자격을 표시하여 양수인이 그의 대리권 또는 처분권을 믿었다면 선의취득범위 확장설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및 독일의 판례는 대리권 흠결의 경우에 모두 선의취득을 인정한다.<sup>41)</sup>

40) 정경영, 앞의 논문, 74면

4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 55217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 다 32118 판결 : 日最判 1960. 1. 21. 民集 14. 1. 1. : 日最判 1961. 11. 24. 時報 281. 27 : RGZ 75. 184.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어음행위의 위조의 경우일 것이다.<sup>42)</sup> 판례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sup>43)</sup>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데도, 양수인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은 경우, 예컨대 착오, 사기 또는 강박 등에 의한 어음행위가 취소된 후 동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선의취득이 성립되는가에 대하여는 선의취득범위 확장설 가운데서도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sup>44)</sup>

무권리자로부터 다시 배서 받은 제3자는 물론, 착오 등의 의사표시로 전자어음을 양수 받은 직접의 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어음이 착오에 의해 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 어음행위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어음행위뿐만 아니라 사기, 강박을 이유로 어음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전자어음법에는 전자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어음행위자가 발행 또는 배서행위를 취소할 경우 그 상대방이 선의취득(“선의취득자는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를 주장하면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이를 강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 선의취득한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이 어음을 다시 배서함으로써 제3자에게 어음이 양도된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즉 어음행위자가 발행 또는 배서 행위를 취소할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 왜냐 하면 전자어음을 발행, 배서한 자는 이미 전자어음을 송신하여 전자어음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어음은 어음행위의 상대방인 수취인 혹은 피배서인에게 수신되어 있게 되는데, 전자어음법에는 전자어음행위자

4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 55217 판결

4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44) 긍정설 : 정희철, 앞의 책, 213-214면. 부정설 : 정동윤, 앞의 책, 159면



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착오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인으로 하여금 반환의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착오를 이유로 어음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제3자인 피배서인은 배서가 연속된 상태에서 선의로 전자어음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음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 다. 양도인과 증서상 권리자로 지정된 자의 인적 동일성 흠결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종이어음과 달리 현실적인 교부가 없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 내에서 발행, 배서, 지급채시 되는 것으로 어음상의 모든 권리행사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 동일성의 흠결될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사술을 써서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하거나 해킹에 의한 인적 동일성의 상위(相違)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up>45)</sup>

#### 라. 양도인이 무능력인 경우

양도인이 무능력인 경우에 그에게 행위능력이 있다고 믿고 어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선의취득범위 제한확장설은 이 경우에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그 논거는 배서의 연속으로 인한 자격수여적 효력은 양도인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따라서 보호할 만한 아무런 권리의외관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정적 안전을 도모하는 무능력자 보호제도는 거래의 동적 안전을 꾀하려는 선의취득과 상치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6)</sup>

### (5)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전자어음에서는 이 점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물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외관을 믿은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자어음에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자어음행위자의 각종 거래내역과 정보사항의 조회가 가능하고 또 거래의 시점

45) 정동윤, 앞의 책, 159면 ; 정희철, 앞의 책, 213면

46) 정동윤, 앞의 책, 158면 ; 정희철, 앞의 책, 213-214면

이 당사자간에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기준에서 보면 양수인의 신뢰보호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제도에서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전자적인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에서 볼 때, 선의취득의 주관적 요건인 악의·중과실의 유무는 어음취득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증권의 점유의 연장선상에서 양수인이 전자어음을 수신 받고 검색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다<sup>47)</sup>.

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은 양수인의 '직전의 양도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자가 무권리자 등인 것을 알았더라도 직전의 양도인이 무권리자 등인 경우를 모른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

어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 (6) 양수인이 어음상 권리취득에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

선의취득이 이루어지려면 양수인이 전자어음상의 권리취득에 관하여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물론,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추심위임배서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는 한 단순히 어음금추심의 대리권만을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에 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sup>48)</sup>. 다만 이 경우에 선의취득되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질권이고, 어음상의 권리 자체는 아니다.

### IV. 자격수여적 효력과 전자어음법 제14조와의 관계

#### 1. 어음법 제16조의 반환의무 불요(不要)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선의취득의 효과로서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하므로(Das Recht aus dem Papier folgt dem Recht am Papier), 선의취득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래의 어음권리자인 어음의 상실자 등은 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된

47) 스웨덴 금융증서계좌법(The Financial Instruments Account Act) 제6장 제4조는 전자등록된 금융증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명문(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다.

48)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 『新版注釋會社法』有斐閣, 1997, 322~323면 참조

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새로이 하자 없는 권리를 창설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이후에 승계취득한 자는 자신의 전자(거래 상대방인 선의취득자)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임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선의취득자는 원시취득이기는 하지만 그 전자인 무권리자 등이 어음을 취득하기 이전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소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자신의 전자인 무권리자 등에 대하여는 배서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sup>49)</sup>. 그러나 선의취득이 원시취득이라 하더라도 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취득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본래의 어음소지인은 배서한 사실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그의 양도행위가 무효·취소됨으로 인하여 이미 배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 결과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무효·취소된 원인에 따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의해 책임지는 수가 있다(민법 제110조 제3항 등).

## 2. 전자어음법 제14조의 반환통지와 어음법 제16조와의 관계

### (1) 전자어음법 제14조의 의의

전자어음의 경우 현실적인 대면(對面) 교부가 없이, 어음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어음의 송신 상대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이 일반 어음보다 더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어음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나, 원인관계에 다름이 있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일방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전자어음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하여 발행 등록된 이상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의사만으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자는 이미 전자어음을 송신하여 전자어음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자이고 전자어음은 어음행위의 상대방인 수취인 혹은 피배서인에게 수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자어음법에서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전자어음을 착오로 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어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게 하고(동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당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를 말소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여기서 전자어음법 제14조 규정의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49) Jacobi. a.a.O. S.298f. : 日最判 1958. 3. 20. 民集 12. 4. 583.

## (2) 전자어음법 제14조의 성격

### 1) 취소의 효력 규정으로 보는 견해

착오로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의 경우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일반법리가 있는데,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이라는 전자어음행위의 취소의 절차와 효과에 관해 특별규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sup>50)</sup> 즉 전자어음법 제14조에 따라 어음행위자가 발행 또는 배서 행위를 취소할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누구인지 그리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왜 그 상대방(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인 어음소지인)이 다시 반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전자어음 취소규정을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어음행위의 성질과 다소 충돌하는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의취득 범위 확장설에 따라 양도행위의 하자를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의문시된다고 한다. 즉 배서인이 착오를 이유로 어음을 취소하더라도 자신의 피배서인으로부터 제3자가 배서가 연속된 상태에서 선의로 전자어음을 배서받았다면 전자어음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소지인(제3자)으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반환하게 하려는 취지라면 선의취득에 관한 어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규정이 된다. 그리하여 어음행위의 취소를 이유로 하는 어음반환에 관한 이 규정은 어음법 이론에 반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취소에 따른 반환 방법(절차) 규정으로 보는 견해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은 착오로 인한 발행 또는 배서의 경우 취소권을 새삼스러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소를 수용하고 어음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그 반환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51)</sup> 즉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착오로 발행 또는 배서를 하였다면 당연히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어음법 이론에 반하므로 어음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위 지적은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의 취소에 관한 규정인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종이 어음이라면 상대방이 자기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고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여 반환하려 할 경우 단지 어음의 점유를 발행인 등에게 이전하면 족하다. 그러나 전자어음

50) 정경영, 앞의 논문, 73-74면

51) 이철승, 앞의 책, 503면

의 경우에는 이같이 어음의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물리적 행위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환으로 의제하는 전자적 처리방법(절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발행인과 배서인이 착오로 발행 또는 배서한 전자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소지인과 어음 외의 합의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소지인 간에 어음의 반환에 관한 쟁송으로 전개될 것인데, 이 점은 종이어음을 착오로 발행 또는 배서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한다.

### (3) 소결

생각건대,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취소의 효력 규정이 아니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어음행위의 특성상 취소의 효력에 따른 전자어음의 반환을 정한 절차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오프라인으로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하고, 그 요청에 응하여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이나 거래은행에 반환신청을 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된다. 전자어음의 반환 요청에 이들이 거부한다면 현재 전자어음법상으로는 아무런 강제 또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 종이어음과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밟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분쟁해결의 형태는 어음반환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전자어음반환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sup>52)</sup>

그런데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이 전자어음을 선의취득범위 확장설에 따라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문제된 어음을 제3자에게 다시 배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선의취득의 범위를 종래의 무권리자로 한정하느냐, 양도행위의 하자의 경우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 제3자의 권리취득 여부가 가려지게 되지만, 어느 견해를 취하든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결론은 같다(민법 제109조 제2항 등).

이후, 착오에 의한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선의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는 어음항변의 문제로 귀결된다.

52) 실제 소의 명칭은 '전자어음 반환통지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될 것이다.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 1812 판결 등 참조

### 3. 전자어음 수신인의 수령거부

전자어음의 송·수신 당사자간에는 지급수단 또는 지급금액 및 계약조건에 관해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원인계약의 채무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자 하고 원인계약의 채권자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배서인은 어음금 3천만원의 전자어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음금액 2천만원이 수신된 경우 등이다.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면전에서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인계약의 채권자가 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면 족하지만,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시스템 내에서 송·수신이 이루어지므로 종이어음의 수령거부와 같은 대면적인 수령거부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수신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의 수신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자어음이 입력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수신인의 의사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법 제14조 제3항은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통지가 있으면 수신자는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령거부의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

## V.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본질을 약속어음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약속어음에 관한 법리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자어음법의 제정은 유가증권법의 시각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어음은 유체물이어야 한다는 수백 년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고정관념이 일시에 깨어진 것이다. 어음의 발행에서부터 유통, 권리행사에 관한 법리가 구성되고 성문화되었던 것인데, 어음의 소재가 종이에선 전자로 대체됨으로써 비공간적인 정보가 어음의 효력을 가지고 지급수단으로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어음법리에 일대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자어음의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크게 나누어져 있으나,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보다 거래의 안전 또는 유통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양도인의 무능력을 제외한 제한확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무권리만 치유된다고 보게 되면 무권대리인을

통해 전자어음을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격수여적효력 범위 확장설에 따라 양도행위의 하자를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즉 배서인이 착오를 이유로 어음을 취소하더라도 자신의 피배서인으로부터 제3자가 배서가 연속된 상태에서 선의로 전자어음을 배서받았다면 전자어음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전자어음을 착오로 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어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로 인한 선의취득의 경우에도 소지인(제3자)으로 하여금 전자어음을 반환하게 하려는 취지라면 선의취득에 관한 어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규정이 된다. 그리하여 어음행위의 취소를 이유로 하는 어음반환에 관한 이 규정은 어음법 이론에 반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전자어음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취소의 효력 규정이 아니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어음행위의 특성상 취소의 효력에 따른 전자어음의 반환을 정한 절차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전자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소재가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된다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실체적인 법리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전자어음상의 어음행위의 방식 및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상의 행위는 전자어음법에 의해 규율되나, 어음행위의 효력 및 어음 당사자의 권리관계는 어음법이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요컨대 전자어음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유체물임을 전제로 구성된 약속어음의 법리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어음의 사이버적인 정보처리 특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법이론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돈각·정완용, 『제4전정 상법강의(하)』, 법문사, 1996.  
 손주찬, 『제11정증보판 상법(하)』, 박영사, 2005.  
 이기수, 『어음법·수표법학』(제4판), 박영사, 1998.  
 이철송, 『어음·수표법』(제8판), 박영사, 2006.

- 정동윤, 『어음·수표법』(제5판), 법문사, 2004.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제6판), 박영사, 2006.
- \_\_\_\_\_, 『영미 어음·수표법』, 고려대 출판부, 2001.
-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 채이식, 『개정판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최기원, 『어음·수표법』(제4증보판), 박영사, 2001.
-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과제 (1)』, 한국법제연구원, 2002.
-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1호(통권 20호), 2003. 3.
- 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2004. 7.
- 정경영,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2004. 7.
- 정찬형, 「전자어음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2004. 7, 26-28면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 『인권과 정의』 2006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12.
-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서, 2003. 5. 23.
- 이철송, 「전자어음의 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1. 7. 31.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의견서, 2003. 5. 23.
- 한국은행, 2006년 중 전자어음이용 및 등록 현황 보도자료, 2007. 2. 12.
- [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data.hwp](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release/press/info/data.hwp)
- 大隅健一郎, 『改訂 手形法小切手法講義』, 有斐閣, 1980.
- 上柳克郎·鴻常夫·竹内昭夫, 『新版注釋會社法』 有斐閣, 1997
- 石井照久, 『手形法·小切手法』, 弘文堂, 1970.
- 鈴木竹雄, 『手形法·小切手法』, 有斐閣, 1976.
- 鈴木竹雄·大隅健一郎(編), 『手形法·小切手法講座(4)』, 有斐閣, 1965.
- 田中誠二, 『新版 手形·小切手法(三全訂版)』, 千倉書房, 1980.
- Baird, Douglas G./Eisenberg, Theodore/Jackson, Thomas H., Commercial and Debtor -Creditor Law : Selected Statutes, Foundation Press, 2001.
- Hueck, Alfred/Canaris, Claus-Wilhelm, Recht der Wertpapiere, Verlag Franz Vahlen, 12. Aufl., 1986.



Jacobi, Ernst, Wechsel-und Scheckrecht, Walter De Gruyter & Co., 1956.

Stranz, J./Martin Stranz, Wechselgesetz, 14. Aufl., 1952.

Zöllner, Wolfgang, Wertpapierrecht, Verlag C.H.Beck, 14. Aufl., 1987.

[Abstract]

## A Study on the Electronic Endorsement

Yang Seok-wan

Professor, Faculty of Law, Cheju National Univ.

A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Statute' was enforced in January 1, 2005,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ame to be able to be issued and transferred in the cyber spac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issued if the issuer has sent the promissory notes to the receiver or its agent by putting them into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rough which the receiver or its agent can receive the promissory notes, and if the promissory notes have been put into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designated by the receiver as a system for receiving the promissory notes or if the promissory notes have been put into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anaged by the receiver.

As the possessor of the promissory notes is prima facie deemed to be the lawful holder if he establishes his title to the promissory notes through an uninterrupted series of endorsement under the Bills Act article 16 paragraph 1, any obligor to the promissory notes (or any one who requires the promissory notes to be returned) has the burden to prove that a holder has taken the promissory notes in bad faith or he has been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acquiring it.

Where a person has been dispossessed of the promissory notes, in any manner whatsoever, the holder who establishes his right thereto in the manner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bound to give up the promissory notes unless he has acquired it in bad faith, or unless in acquiring it he has been guilty of gross negligence.

Any defect in the act of the promissory notes negotiation as well as the defect in the title of the person who negotiated it, can be cured by the good faith purchase. But the act which is absolutely invalid and null because of mental incompetence or breach of

public policy, cannot be cured.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endorsement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effect of enforcement-establishing title, good faith purchase, comparing the parallel issues concerning the real promissory notes.

**Key Words** : electronic promissory notes, endorsement, original, good faith purchase, establishing title